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8-85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0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노인복지사업 축소 등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,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현행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 확대(안 제4조제3항)

- 사업지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8. 30. ~ 9. 19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권고사항 있음

구분	구청장 방침	심의회 상정안	해당부서 조치결과
1	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<u>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	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<u>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	<b>반영</b>
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- 6)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위원으로”를 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 ② (생 략) ③ <u>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 원한다.</u></p> 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<u>위원으로</u> 구성 한다. ③ ~ ⑥ (생 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위원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</u> 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**  
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노인복지사업 축소 등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, 해당 조항(제4조제3항)을 삭제하여 사업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이유정
연락처	02-3153-8855